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약자는 KIRI로 표시한다.

제2조 (목적) 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정책에 관한 연구
2. 보험산업의 경영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3. 보험마케팅, 보험상품 및 가격에 관한 연구
4.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5. 금융산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6. 보험산업 및 일반경제에 관한 동향 분석 연구
7. 국내외 보험 및 금융산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9.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제반 사항

제 2 장 사 원

제5조 (사원의 자격) ① 연구원의 사원은 정사원과 준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사원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로 한다.

③ 준사원은 보험업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사원의 가입) ① 연구원의 사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사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와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은 전항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원명부) ① 원장은 연구원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원의 명칭 및 대표자(주식회사 또는 단체의 장, 즉 법인등기부 본상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수권 또는 법정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③ 사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사원은 이를 원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변경사항을 사원명부에 기재한다.

제8조 (회비) ① 사원은 연구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가입비 및 연회비로 구분하며, 그 금액의 분담비율,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9조 (사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사원은 총회 의결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사원은 연구원의 정관,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원의 대표권) ① 사원으로서 연구원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사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사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원의 대표권은 신규로 사원의 대표자가 된 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11조 (사원의 제명) ① 사원이 이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 정사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원자격의 소멸) ① 사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사원이 서면으로 탈퇴를 통지한 때
2.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한 때

다만, 영업계속의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 또는 단체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때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원의 제명이 있는 때

② 사원이 제1항의 사유로 사원자격이 소멸되었을 때는 연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여 연구원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가입비 또는 경비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경비의 출연) 사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할 금액의 총액, 분담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자금차입 등) 본원은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출연할 경비를 각 사원에게 전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겸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
3.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전체 정사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③ 위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 의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일 7일전에 각 사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가입승인, 가입비의 결정, 사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정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정사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총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해산, 사원의 가입 및 제명에 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의장과 원장이 기명 날인하고 연구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1조 (임원의 정수) ① 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의 선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재임기간 중 총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생명보험협회 회장
2. 손해보험협회 회장

②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이사”라 한다)는 12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1. 원장
2. 총회에서 선출하는 사원대표인 이사(이하 “사원대표이사”라 한다)

가. 생명보험 사원대표이사 5인

(선임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구원의 운영경비 분담비율 상위 3개사, 그 외의 회사 중에서 2개사)

나. 손해보험 사원대표이사 5인

(선임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연구원의 운영경비 분담비율 최 상위 1개사, 차상위 4개사 중 2개사, 그 외의 회사중 2개사)

3. 보험개발원장

③ 원장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구성하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고문)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원장은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 이외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감사) ① 감사는 사원의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에 불응할 때에는 총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정기총회에 당해연도의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해임)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7조 (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 궐위시는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권한과 업무(대표권과 이사의 역할 포함)를 갖는다.

제28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직제,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본원 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가 번갈아 수행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 께위시는 의장이 아닌 당연직이사, 원장의 순으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할 주요한 사항
 - 5. 제규칙,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이사회 의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안건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 의장 및 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연구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 (운영자산) 연구원의 운영자산은 사원의 가입비 및 기타자산으로 구성한다.

제36조 (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기금은 매회계년도의 잉여금, 사원의 출연금 또는 용역

사업의 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경비)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사원의 회비, 용역사업의 수익,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적립금) 사원의 가입비 등을 별도로 적립하고 동 적립금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이 출연하는 연구원 경비의 대체 또는 특수목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 7 장 해 산

- 제41조 (해산)** ① 연구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 정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연구원을 해산할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정하며 전체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제 8 장 정관변경

- 제42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은 총회의 의장, 원장 또는 전체 정사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의 결의는 전체 정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연구원의 설립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연구원의 회계관련규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의 회계처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이 기간 중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업무 및 재산등의 승계) ① 연구원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부설보험연구원의 모든 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인수한다.

② 연구원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이 부설 보험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연구원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승계한다.

③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설립일 당시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원 직원의 신분과 그에 대한 권리의무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하며 동 인원의 연구원 입사 연월일은 보험개발원 입사 연월일로 소급한다.

제4조 (임원선임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시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2013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단, 이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초대 원장의 임기로만 해석하고, 그 이후는 본 정관의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② 제22조 제2항의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이사 연임은 제2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일로부터 최초 임기 이후 1회에 한한다.

제5조 (발기인) ① 연구원의 발기인은 설립당시의 사원이 되며 발기인의 주소 및 성명은 다음과 같다.

②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하기명의 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 3. 28 금융위원회 허가)

제2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